

투자 위험 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멀티에셋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멀티에셋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 제 2 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에셋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 제 2 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멀티에셋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 제 2 호[주식]**
- 집합투자업자 명칭: **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본 · 지점
(자세한 내용은 협회 www.kofia.co.kr 및 멀티에셋자산운용(주) multiasset.miraeasset.com 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기준 일: 2023.03.31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3.04.27**
-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모집 또는 매출 총액)
-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홈페이지 → 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 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이 투자설명서는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서명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참고] 편드용어의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

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3.03.31)

멀티에셋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제2호[주식]

(펀드코드 : 67432)

투자 위험 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멀티에셋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주로 글로벌 클린에너지 자산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며, 주식 등 가격변동 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멀티에셋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제2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클린에너지 자산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추가형(추가납입가능),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종류형, 모자형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 없음																																																																								
투자비용	<table border="1"><thead><tr><th rowspan="2">클래스종류</th><th colspan="5">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 보수 (단위: %)</th><th colspan="4">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 기간별 총비용 예시(단위: 천원)</th></tr><tr><th>판매 수수료</th><th>총보수</th><th>판매 보수</th><th>동종 유형 총보수</th><th>총보수 · 비용</th><th>1년</th><th>2년</th><th>3년</th><th>5년</th><th>10년</th></tr></thead><tbody><tr><td>수수료선취- 오프라인(A)</td><td>납입금액의 1.0% 이내</td><td>0.8575</td><td>0.45</td><td>1.73</td><td>0.8945</td><td>190</td><td>284</td><td>382</td><td>589</td><td>1,184</td></tr><tr><td>수수료미정구- 오프라인(C1)</td><td>-</td><td>1.1575</td><td>0.75</td><td>1.89</td><td>1.1945</td><td>121</td><td>249</td><td>383</td><td>671</td><td>1,528</td></tr><tr><td>수수료선취- 온라인(Ae)</td><td>납입금액의 0.5% 이내</td><td>0.6325</td><td>0.225</td><td>1.28</td><td>0.6695</td><td>118</td><td>189</td><td>263</td><td>421</td><td>878</td></tr><tr><td>수수료미정구- 온라인(Ce)</td><td>-</td><td>0.7825</td><td>0.375</td><td>1.47</td><td>0.7825</td><td>82</td><td>168</td><td>259</td><td>454</td><td>1,033</td></tr></tbody></table>									클래스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 보수 (단위: %)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 기간별 총비용 예시(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보수 ·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0.8575	0.45	1.73	0.8945	190	284	382	589	1,184	수수료미정구- 오프라인(C1)	-	1.1575	0.75	1.89	1.1945	121	249	383	671	1,528	수수료선취- 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0.6325	0.225	1.28	0.6695	118	189	263	421	878	수수료미정구- 온라인(Ce)	-	0.7825	0.375	1.47	0.7825	82	168	259	454	1,033
클래스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 보수 (단위: %)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 기간별 총비용 예시(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보수 ·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0.8575	0.45	1.73	0.8945	190	284	382	589	1,184																																																															
수수료미정구- 오프라인(C1)	-	1.1575	0.75	1.89	1.1945	121	249	383	671	1,528																																																															
수수료선취- 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0.6325	0.225	1.28	0.6695	118	189	263	421	878																																																															
수수료미정구- 온라인(Ce)	-	0.7825	0.375	1.47	0.7825	82	168	259	454	1,033																																																															
<p>주1) '1,000 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 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비용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했습니다.</p> <p>주2) 종류 A 형과 종류 C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5 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 형과 종류 Ce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5 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주3)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33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p> <p>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2023.03.31 기준입니다.</p>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	클래스종류	최초설정일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2.04.01~ '23.03.31	21.04.01~ '23.03.31	20.04.01~ '23.03.31	18.04.01~ '23.03.3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07.04.18	-5.4	-5.6	24.57	14.89	4.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2007.04.10	-5.69	-5.89	24.22	14.58	4.2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17.09.28	-5.18	-5.38	24.85	15.2	13.78	
비교지수	-	-18.13	30.71	21.45	16.19	4.47	
수익률 변동성	2007.04.10	29.36	25.71	30.30	28.43	20.60	

주1) 비교지수 : S&P Global Clean Energy Index ×90% + Call×10%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나 등락했는지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 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현황 (2023.03.31 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 주식형, 단위 : %)				운용 경력년 수	
				집합 투자 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동현	1982	팀장 (책임)	23개	2,844억	-	-	-4.92	-9.65	6년 10개월		
박건웅	1992	매니저 (부책임)	-	-	-	-	-4.92	-9.65	3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FI · 멀티전략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주2)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6)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 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head> <tbody> <tr> <td>주식등 가격변동위험</td><td> <p>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특히 해외주식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증시상황의 변화와 당해 기업의 영업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섹터(Sector)에 투자하므로 전체시장 투자 대비 수익률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td></tr> <tr> <td>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td><td> <p>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损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 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td></tr> <tr> <td>환율변동 위험</td><td> <p>해외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원칙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70~100% 수준[KRW 환산평가액 기준]으로 헛지지합니다. 통화선물을 통한 헛지시에 만기 불일치로 인해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선물계약의 만기는 투자신탁만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잔여기간을 위한 연장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 때의 시장 환율 및 선도환 프리미엄 수준에 따라 환위험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투자수익 부분은 투자신탁 설정단계에서는 환 위험 해지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수익이 실현되어 국내 통화로 환전되는 시점에서 환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p> <p>당 펀드가 추가형/개방형으로 설계되어 환매 및 추가설정에 따라 소액의 입출금이 있을 경우 부분적으로 환위험 해징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해징 가능 시점에 따라 일정기간 환위험 해징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p> </td></tr> <tr> <td>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td><td> <p>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td></tr> <tr> <td>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td><td> <p>해외 기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p> </td></tr> <tr> <td>시장위험 및 개별위험</td><td> <p>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해외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주식 및 수익증권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증시상황의 변화와 당해 기업의 영업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td></tr> <tr> <td>거래상대방 위험</td><td> <p>당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td></tr> </tbody> </table>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p>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특히 해외주식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증시상황의 변화와 당해 기업의 영업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섹터(Sector)에 투자하므로 전체시장 투자 대비 수익률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p>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损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 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환율변동 위험	<p>해외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원칙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70~100% 수준[KRW 환산평가액 기준]으로 헛지지합니다. 통화선물을 통한 헛지시에 만기 불일치로 인해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선물계약의 만기는 투자신탁만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잔여기간을 위한 연장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 때의 시장 환율 및 선도환 프리미엄 수준에 따라 환위험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투자수익 부분은 투자신탁 설정단계에서는 환 위험 해지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수익이 실현되어 국내 통화로 환전되는 시점에서 환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p> <p>당 펀드가 추가형/개방형으로 설계되어 환매 및 추가설정에 따라 소액의 입출금이 있을 경우 부분적으로 환위험 해징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해징 가능 시점에 따라 일정기간 환위험 해징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p>	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	<p>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p>해외 기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p>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p>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해외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주식 및 수익증권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증시상황의 변화와 당해 기업의 영업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거래상대방 위험	<p>당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p>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특히 해외주식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증시상황의 변화와 당해 기업의 영업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섹터(Sector)에 투자하므로 전체시장 투자 대비 수익률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p>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损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 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환율변동 위험	<p>해외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원칙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70~100% 수준[KRW 환산평가액 기준]으로 헛지지합니다. 통화선물을 통한 헛지시에 만기 불일치로 인해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선물계약의 만기는 투자신탁만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잔여기간을 위한 연장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 때의 시장 환율 및 선도환 프리미엄 수준에 따라 환위험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투자수익 부분은 투자신탁 설정단계에서는 환 위험 해지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수익이 실현되어 국내 통화로 환전되는 시점에서 환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p> <p>당 펀드가 추가형/개방형으로 설계되어 환매 및 추가설정에 따라 소액의 입출금이 있을 경우 부분적으로 환위험 해징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해징 가능 시점에 따라 일정기간 환위험 해징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p>																
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	<p>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p>해외 기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p>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p>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해외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주식 및 수익증권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증시상황의 변화와 당해 기업의 영업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거래상대방 위험	<p>당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매입방법	<p>(1) <u>오후 5시 이전 : 자금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T+2)</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2) <u>오후 5시 이후 : 자금 납입일로부터 제4영업일(T+3)</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p>(1) <u>오후 5시 이전 :</u> - 환매청구일로부터 <u>제4영업일(T+3)</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u>제8영업일(T+7)</u>에 환매대금을 지급</p> <p>(2) <u>오후 5시 이후</u> - 환매청구일로부터 <u>제5영업일(T+4)</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u>제9영업일(T+8)</u>에 환매대금을 지급</p>															
	공시장소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멀티에셋자산운용(주) (대표번호 : 02-3774-8000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multiasset.miraeasset.com)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 · 매출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3.04.27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선택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http://multiasset.miraeasset.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한 사항 (52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랩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투자매 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특정금전신탁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퇴직연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무권유 저비용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청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multiasset.mirae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multiasset.mirae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multiasset.miraeasset.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종류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멀티에셋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주식]	67432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678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1)	674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2)	68417
수수료선취-온라인 (Ae)	AR86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AR85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AZ68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e-P)	AZ68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B1934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BP8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BP865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BU9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rp)	DA72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p-e)	DA72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판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X]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까지 모집 가능(1좌 단위로 모집)하며,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모집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2) 모집장소 :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multiasset.mirae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0) 투자신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0) 투자신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종류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멀티에셋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주식]	67432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678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1)	674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2)	68417
수수료선취-온라인 (Ae)	AR86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AR85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AZ68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e-P)	AZ68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B1934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BP8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BP865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BU9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rp)	DA72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p-e)	DA72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가. 자투자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7.04.10	투자신탁 최초설정
2007.05.30	약관변경 – 종류C2 가입자격 대상에 ‘판매회사 특정금전신탁’ 추가
2007.06.15	운용전문인력 변경 (팀운용→김상훈)
2009.05.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산은 S&P 인프라주식 자투자신탁 → 산은 S&P 인프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009.06.09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김종욱, 변경 후: 유재홍)
2009.12.14	집합투자규약변경 – 매입기준가적용일변경(T+2) 및 기재정정
2009.12.16	집합투자규약변경 – 매입기준가적용일변경(T+1)
2010.03.16	집합투자규약변경 – 매입기준가적용일변경(T+2) 및 기재정정
2010.05.03	판매보수 인하(정율식)
2010.05.12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유재홍, 변경 후: 서기원)

2010.07.29	집합투자규약 변경(임의해지 요건 변경)
2011.07.04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서기원, 변경 후: 한철기) 비교지수 Index 기초데이터 명칭 및 구성조건 변경
2012.09.0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한철기, 변경 후: 서기원)
2014.02.0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서기원, 변경 후: 한철기)
2015.01.23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내에 다른 자집합투자기구 추가 - KDB S&P글로벌인프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16.01.20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한철기, 변경 후: 김지희)
2016.02.26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 관련 과세사항 추가 - 집합투자업자명 변경(산은자산운용(주)→멀티에셋자산운용(주)) - 투자신탁 명칭 변경(산은S&P 글로벌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주식]→멀티에셋S&P 글로벌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16.05.2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김지희, 변경 후: 정삼윤)
2016.07.02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5단계 체계 → 6단계 체계) - 위험등급 변경 : 1등급(매우 높은 위험)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2016.07.12	- 다른 모투자신탁 추가(멀티에셋 S&P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투자신탁 명칭 변경(멀티에셋S&P 글로벌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주식]→ 멀티에셋S&P 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주식])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정삼윤, 변경 후: 신민석)
2016.11.04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신민석 운용역 → 최준 운용역)
2016.11.18	- 펀드명칭 변경 멀티에셋S&P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제2호 → 멀티에셋 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제2호 -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 변경 S&P Global Clean Energy Index에 편입된 주식에 투자 → 글로벌 클린에너지 관련 주식에 투자
2017.02.17	집합투자업자 보수 인하(0.70%→0.35%)
2017.03.20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신한아이타스→미래에셋펀드서비스)
2017.04.29	클린클래스(AG, CG) 추가
2017.07.31	Ce 클래스 추가
2017.10.13	모 투자신탁 환해지 전략 변경 : 환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환해지(90% 수준, USD(\$) 환산평가액 기준) → 환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환해지(70~100% 수준, KRW 환산평가액 기준)
2018.01.18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최준 운용역 → 최준영 운용역)
2018.03.2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최준영 운용역 → 박호건 운용역)

2018.10.02	1) 판매보수율 및 수탁보수율 인하 2) 판매보수율(C-P, Ce-P, S-P, AG, CG 클래스) 오기 정정
2018.10.10	1) 환매수수료 삭제 2)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 3)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4) 수익자총회 관련 문구 추가 5) 기타 오기정정 6)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표 오기기재 정정
2018.10.26	S, S-P 클래스 판매보수 인하
2019.05.14	1)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 2)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3) 기타 오기정정
2019.09.25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020.06.05	1)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 (위험등급 변경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 2등급 (높은 위험)) 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내용 반영 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0.09.18	Crp, Crp-e 클래스 추가
2020.10.15	Crp-e 클래스 총 보수율 오기정정 ※ 총 보수율 외 개별 보수율 및 신탁계약서 상 보수율 이상 없음
2021.04.29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 (위험등급 변경 : 2등급(높은 위험) → 1등급(매우 높은 위험))
2022.04.15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박호건 운용역 → 박찬곤 운용역)
2022.05.19	1)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고난도상품 해당 여부, 간이투자설명서 보수비용 정보 등)
2022.12.15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박찬곤 운용역 → 김동현 운용역)
2023.02.16	부책임운용전문인력(박건웅 운용역) 추가
2023.04.27	1)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 2)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연금저축계좌 과세 등) 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매매회전율, 증권대차거래 등)

나. 모투자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멀티에셋 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7.04.16	투자신탁 최초설정
2009.05.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산은 S&P 글로벌클린에너지 주식 모투자신탁

	-> 산은 S&P 글로벌 클린에너지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2009.06.09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김종육, 변경 후: 유재홍)
2010.03.16	규약 변경: 매입기준가 적용일변경(T+2) 등
2010.05.12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유재홍, 변경 후: 서기원)
2011.0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변경[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투자신탁 해지요건 변경) 등]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서기원, 변경 후: 한철기) 비교지수 Index 기초데이터 명칭 및 구성조건 변경
2012.09.0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한철기, 변경 후: 서기원)
2014.02.0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서기원, 변경 후: 한철기)
2016.01.20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한철기, 변경 후: 김지희)
2016.05.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업자명 변경 (산은자산운용(주)→ 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투자신탁 명칭 변경 (산은 S&P 글로벌 클린에너지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멀티에셋S&P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6.05.2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김지희, 변경 후: 정삼윤)
2016.07.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5단계 체계 → 6단계 체계) - 위험등급 변경 : 1등급(매우 높은 위험) → 2등급(높은 위험)
2016.0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을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 추가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정삼윤, 변경 후: 신민석)
2016.11.04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신민석 운용역 → 최준 운용역)
2016.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명칭 변경 멀티에셋S&P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모투자신탁 → 멀티에셋 글로벌 클린에너지 증권 모투자신탁 - 운용전략 변경 S&P Global Clean Energy Index에 편입된 주식에 투자 → 글로벌 클린에너지 관련 주식에 투자
2017.03.20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신한아이티스→ 미래에셋펀드서비스)
2017.10.23	<p>환헤지 전략 변경</p> <p>: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환헤지(90% 수준, USD(\$) 환산평가액 기준) →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환헤지(70~100% 수준, KRW 환산평가액 기준)</p>
2018.01.18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최준 운용역 → 최준영 운용역)
2018.03.2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최준영 운용역 → 박호건 운용역)
2018.05.30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갱신
2019.05.2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 2) 투자위험등급 변경(2등급 → 3등급) 3)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4) 수익자총회 관련 문구 추가 5) 기타 오기정정
2020.06.05	1)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위험등급 변경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 2등급 (높은 위험)) 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내용 반영 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1.06.03	1)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 (위험등급 변경 : 2등급(높은 위험) → 1등급(매우 높은 위험))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고난도상품 해당 여부)
2022.04.15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박호건 운용역 → 박찬곤 운용역)
2022.06.10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
2022.12.15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박찬곤 운용역 → 김동현 운용역)
2023.02.16	부책임운용전문인력(박건웅 운용역)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멀티에셋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미래에셋증권빌딩 16층 (☎02-3774-80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2023.03.31 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 주식형, 단위: %)				운용 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 투자 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동현	1982	팀장 (책임)	23개	2,844억	-	-	-4.92	-9.65	- 운용경력 : 6년 11개월 - (현) 멀티에셋자산운용 FI·멀티전략운용본부 - HMC 투자증권 신탁팀	

②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2023.03.31 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 주식형, 단위: %)	운용 경력년수 및 이력
----	----	----	-------------------------	-------------------------------------	-----------------

			집합 투자 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건웅	1992	매니저 (부책임)	-	-	-	-	-4.92	-9.65	- 운용경력 : 3개월 - (현) 멀티에셋자산운용 FI · 멀티전략운용본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 없음]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FI·멀티전략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주2)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6)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③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박호건	2018.03 ~ 2022.04
박찬곤	2022.04 ~ 2022.12.
김동현	2022.12 ~ 현재

주1) 2023년 03월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④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부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박건웅	2023.02 ~ 현재

주1) 2023년 03월 기준 최근 3년간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투자대상 유가증권 등

멀티에셋 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



멀티에셋 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주식]



수익자 I

수익자 II

수익자 III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멀티에셋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주식]	67432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678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1)	674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2)	68417
수수료선취-온라인 (Ae)	AR86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AR85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AZ68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e-P)	AZ68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B1934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BP8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BP865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BU9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rp)	DA72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p-e)	DA728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로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로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랩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투자매 매업자·투자증개업자의 특정금전신탁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퇴직연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무권유 저비용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청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각 종류별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멀티에셋 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
멀티에셋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제2호[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멀티에셋퇴직연금클린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멀티에셋퇴직연금클린에너지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
멀티에셋클린에너지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멀티에셋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멀티에셋글로벌	주요투자대상	해외주식 60%이상, 국내채권 40%이하

클린에너지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로벌 클린에너지 자산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장기 고성장이 전망되는 전세계 클린에너지 관련 상장주식에 주로(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합니다. 한편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원칙적으로 환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70~100% 수준[KRW 환산평가액 기준]으로 환해지할 예정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클린에너지 자산과 관련된 주식에 신탁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원칙적으로 환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70~100% 수준 [KRW 환산평가액 기준]으로 환해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수익증권 (모투자신탁)	60% 이상	멀티에셋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②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10% 이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2. 금융기관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음
③	신탁업자 고유재산 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및 투자한도
 <멀티에셋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주식	60% 이상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 중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어 거래되는 주권, 주식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글로벌 클린에너지 자산 관련 주식에 한한다)
②	채권	40% 이하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 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④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⑤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 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⑥	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외국법령에 의거하여 발행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포함)에 30%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 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으로서 집합투자증권 또는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해외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중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또는 법 시행령 제 45 조제 2 호다목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20% 이하)
⑦	증권의 대여 ¹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⑧	환매조건부매도	보유 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⑨	장내파생상품	10%이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으로 외국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포함
⑩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거래되는 거래로서 환율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선도환거래
⑪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⑫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2. 금융기관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3. 위의 1 및 2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주1) 본 집합투자기구는 수익률 증진을 위해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수익증권에의 투 자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외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③투자한도 및 제 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의 ① 및 ②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p>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p> <p>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p> <p>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으로 가.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의 ①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	---

※ 모투자신탁의 투자 제한

〈멀티에셋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p>자산총액의 10%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p>
② 동일종목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외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간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동일회사 발행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까지 :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 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월간 평균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단,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

③동일법인이 발행한 증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0%(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를 초과하는 행위	④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0%(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를 초과하는 행위
⑤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⑤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⑥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⑦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⑧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⑧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⑨후순위채권	<p>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 투자대상 및 한도의 ① 내지 ④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의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가. 투자대상 및 한도의 ① 내지 ④의 투자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⑩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 및 한도의 ⑤ 내지 ⑩, 위의 ② 내지 ⑥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위의 ②의 본문, ④ 내지 ⑥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 1)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클린에너지 자산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을 추구합니다.
- 2) 이 투자신탁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 지수 : S&P Global Clean Energy Index × 90% + Call × 10%

나.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멀티에셋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포트폴리오 관리 및 편입

- 신탁재산의 90% 수준에서 글로벌 클린에너지 관련 주식에 투자
- S&P Global Clean Energy Index를 구성하는 종목과 그 외에 글로벌 클린에너지 자산과 관련된 종목을 편입

상기 포트폴리오 종목 및 비중은 시장상황 및 운용전략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위험 관리

■ 위험관리 체계

당사는 위험관리규정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위험 관리의 정책수립·감독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총괄합니다. 운용 조직과 독립된 위험관리담당부서는 투자운용과 관련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전적인 위험 점검을 실시하며, 집합 투자기구 설정 이후에는 운용내역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험을 관리합니다. 매월 자산운용 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전략 및 운용정책을 수립하여, 성과평가 회의를 통하여 포트폴리오 위험 및 요인분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단계별로 리스크관리 조치를 시행하여 투자전략을 재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종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운용 부서의 실시간 자체점검 → 컴플라이언스 팀 점검 → 내부 감사로 연계되는 다종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통해 투자 제약 및 고객 부여 제약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시 방편식의 관리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에 기초한 사전 컴플라이언스에 주력하여 오류 발생 확률을 최소화 합니다.

■ 환위험 관리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구 분		멀티에셋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
환헷지 여부		환헷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환헷지를 실행합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환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70~100% 수준[KRW 환산평가액 기준]의 환해지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해지 방법	환해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해지 장점	환해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해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해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해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해지 단점	환해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해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해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해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해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해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해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해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환해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해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글로벌 클린에너지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두자신탁 신탁재산의 70% 이상 투자하므로, 모두자신탁이 투자하는 글로벌 클린에너지 관련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주로 결정 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p>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특히 해외주식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증시상황의 변화와 당해 기업의 영업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섹터(Sector)에 투자하므로 전체시장 투자 대비 수익률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환율변동 위험	<p>해외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원칙적으로 환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70~100% 수준[KRW 환산평가액 기준]으로 헛지합니다. 통화선물을 통한 헛지시에 만기 불일치로 인해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선물계약의 만기는 투자신탁만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잔여기간을 위한 연장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 때의 시장 환율 및 선도환 프리미엄 수준에 따라 환위험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투자수익의 부분은 투자신탁 설정단계에서는 환 위험 헤지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수익이 실현되어 국내 통화로 환전되는 시점에서 환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p> <p>당 펀드가 추가형/개방형으로 설계되어 환매 및 추가설정에 따라 소액의 입출금이 있을 경우 부분적으로 환위험 헤징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헤징 가능 시점에 따라 일정기간 환위험 헤징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p>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해외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주식 및 수익증권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증시상황의 변화와 당해 기업의 영업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순자산가치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문서 “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게 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은 채권등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는 투자신탁으로 설정기간이 3년 이상 된 편드로서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투자위험 등급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 등급은 6 등급 중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되는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 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해당 투자신탁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 대상 국가의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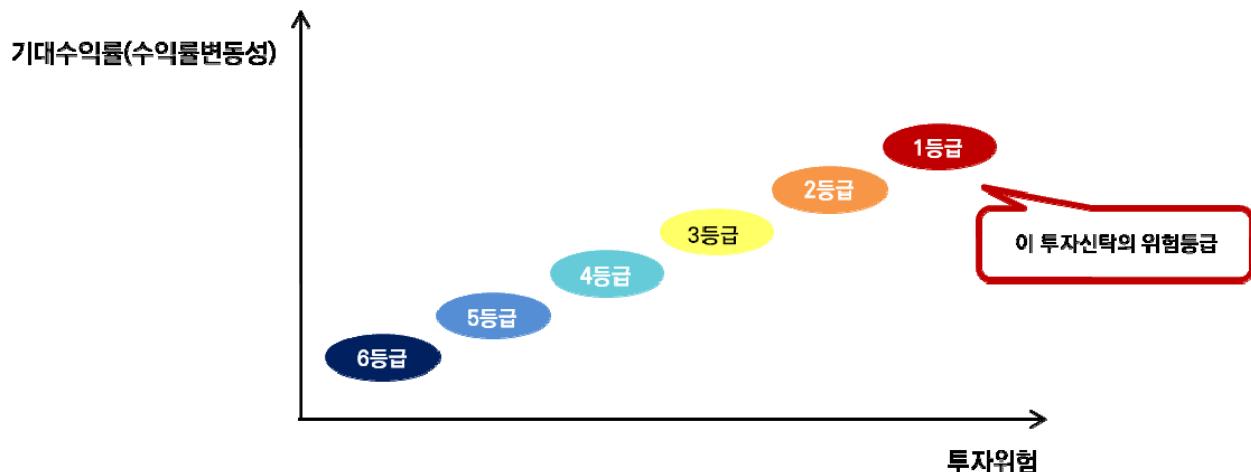
* 실제 수익률 변동성[실제 연환산 표준편차(최근 3년간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 29.75 %

〈멀티에셋자산운용회사 위험등급 기준표(연환산 표준편차 기준)〉

등급	1 (매우 높은 위험)	2 (높은 위험)	3 (다소 높은 위험)	4 (보통 위험)	5 (낮은 위험)	6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영업시간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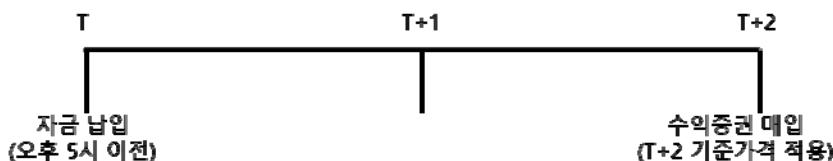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1)	가입제한은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투자매매업자·투자

인-랩 (C2)	중개업자의 특정금전신탁 및 집합투자기구
수수료선취-온라인 (Ae)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면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
수수료후취-온라인슈 퍼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개인연금 (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 (Ce-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슈퍼-개인연금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무권유저비용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퇴직연금 (Crp)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 (Crp-e)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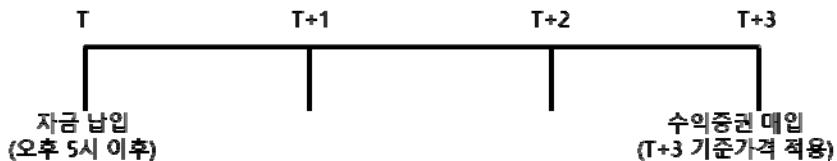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되는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T+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용.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 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5) 매입청구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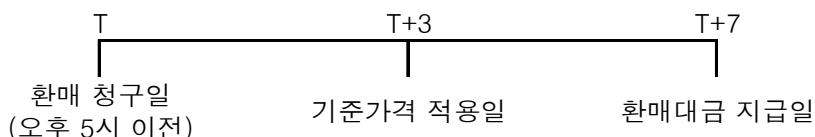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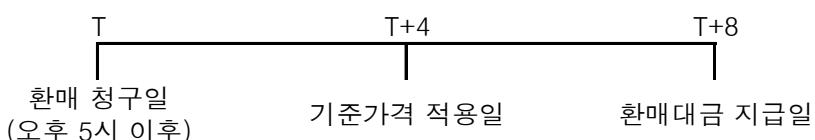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 영업시간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가 온라인 환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되는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T+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T+7)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T+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T+8)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4)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③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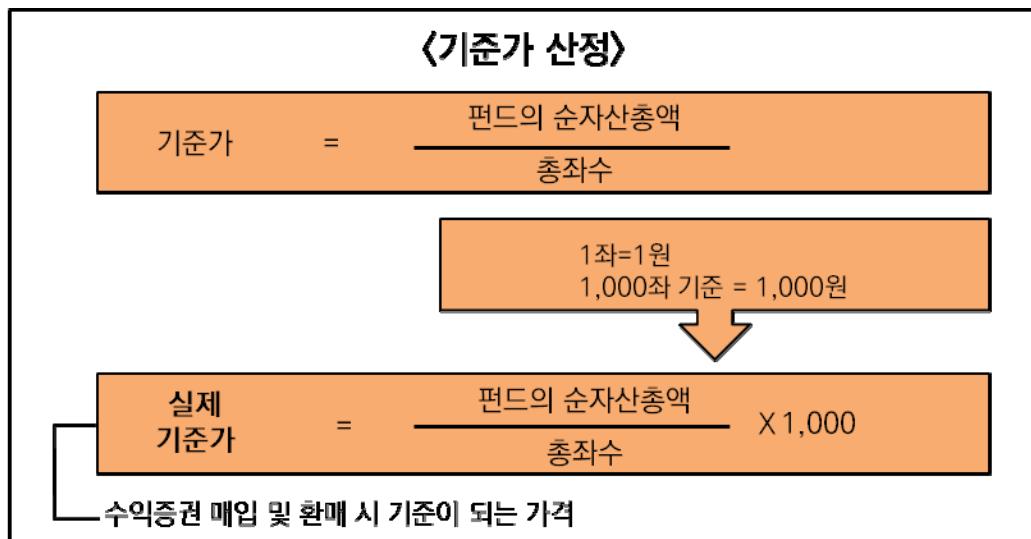
다. 전환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multiasset.miraeasset.com) ·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모집합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사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상장자산유동화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자산유동화증권에 한정)
비상장자산유동화증권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위의 상장자산유동화증권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다만,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및 실물자산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무증서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1)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2) 업무 : 법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적용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이 사회에 보고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1)	가입제한은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특정금전신탁 및 집합투자기구
수수료선취-온라인 (Ae)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면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e-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 유저비용 (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rp)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p-e)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입자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투자매매업자·투자증 개업자는 이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부과기준		납입금액	환매금액	이익금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	1.0%이내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C)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Cw)	-	-			
수수료선취-온라인 (Ae)	-	0.5%이내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S)	-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개인연금 (C-P)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연금 (Ce-P)	-	-		없음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AG)	-	0.7%이내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CG)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rp)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p-e)	-	-			

* 선취(종류Ae)/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자격은 “제2부의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구조”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0.35	0.45	0.045	0.0125	0.8575	1.73	0.037	0.8945	0.8945	0.14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1)	0.35	0.75	0.045	0.0125	1.1575	1.89	0.037	1.1945	1.1945	0.14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2)	0.35	0.00	0.045	0.0125	0.4075	-	-	0.4075	0.4075	-
수수료선취-온라인 (Ae)	0.35	0.225	0.045	0.0125	0.6325	1.28	0.037	0.6695	0.6695	0.14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0.35	0.35	0.045	0.0125	0.7575	-	0.005	0.7625	0.7625	0.03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0.35	0.70	0.045	0.0125	1.1075	-	0.036	1.1435	1.1435	0.14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e-P)	0.35	0.35	0.045	0.0125	0.7575	-	0.037	0.7945	0.7945	0.14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0.35	0.21	0.045	0.0125	0.6175	-	-	0.6175	0.6175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0.35	0.32	0.045	0.0125	0.7275	-	-	0.7275	0.727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 비용 (CG)	0.35	0.53	0.045	0.0125	0.9375	-	-	0.9375	0.937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0.35	0.375	0.045	0.0125	0.7825	1.47	-	0.7825	0.782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rp)	0.35	0.30	0.045	0.0125	0.7075	-	-	0.7075	0.707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p-e)	0.35	0.15	0.045	0.0125	0.5575	-	-	0.5575	0.5575	-
지급 시기	매3개월 후급				-	-	사유 발생시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2.04.10 ~ 2023.04.09]

※기타비용 종류 :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거래비용(repo수수료),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구 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회계감사비(과세)	3,126,155
자산평가수수료(과세)	1,878,933
환율정보사용료(과세)	61,235
펀드결제수수료(과세)	1,104,600
해외보관보수환입(과세)	-132,344
해외거래비용(과세)	2,181,493
해외보관보수(과세)	10,198,769
기타비용(과세)	7,881,227
해외거래비용환입(과세)	-10,165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2.04.10 ~ 2023.04.09]

※ 증권거래비용 종류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증권 등의 자산매매수수료 등

구 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REPO증개수수료(과세)	323,599
파생매매수수료(과세)	9,643,919
외화주식매매수수료	92,836,895

주식매매수수료	1,663,115
---------	-----------

주3)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 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금융비용	-
발행분담금	-

주5)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7) 설정 전인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추정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않았으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이 설정된 후에는 발생된 비용을 기재합니다.

주8)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9) '동종유형 총보수'는 2023.03.31 기준입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90	284	382	589	1,18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90	284	382	589	1,18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1	249	383	671	1,52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1	249	383	671	1,528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C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3	88	135	236	53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43	88	135	236	538
수수료선취- 온라인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8	189	263	421	87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8	189	263	421	878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4	191	292	425	94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4	191	292	425	948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7	239	365	633	1,396

오프라인- 개인연금 (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7	239	365	633	1,396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Ce- 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1	166	255	443	986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1	166	255	443	986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4	132	204	358	815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6	227	311	492	1,03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8	202	310	544	1,238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8	202	310	544	1,238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r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2	168	259	454	1,033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Cr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2	168	259	454	1,033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r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3	148	227	395	882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Cr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3	148	227	395	882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Cr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7	117	179	312	700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Cr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7	117	179	312	700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3)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4)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클래스는 해당 후취판매수수료율을 반영한 값으로 3년 이상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은 감소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년5월4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동안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위 (1)에 의한 이익금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3)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4)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자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6)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8)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9)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내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내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1 이면 1, 환급비율<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자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 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 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사항】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1.4%) 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14%, 지방소득세1.4%) 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 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①과 ②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①연 1,800 만원 한도 ②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세액공제 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4,500 만원 이하 (5,500 만원 이하)	600 만원	16.5%
	4,500 만원 초과 (5,500 만원 초과)	(900 만원)	13.2%
<p>* 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p> <p>**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p>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분리과세한도	연간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간 1,200 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됩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가입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세제혜택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년까지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6기(2022.04.10 – 2023.04.09)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5기(2021.04.10 – 2022.04.09)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4기(2020.04.10 – 2021.04.09)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 재무제표

(단위: 백만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6 기	제 15 기	제 14 기
	(2023.04.09)	(2022.04.09)	(2021.04.09)
운용자산	66,875	74,226	75,991
증권	65,916	73,263	75,048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959	962	490
기타 운용자산	0	0	452
기타자산	320	274	403
자산총계	67,196	74,500	76,394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11	268	487
부채총계	311	268	487
원본	43,314	43,994	42,887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잉여금	23,571	30,237	33,019
자본총계	66,885	74,232	75,907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6 기	제 15 기	제 14 기
	(2022.04.10 – 2023.04.09)	(2021.04.10 – 2022.04.09)	(2020.04.10 – 2021.04.09)
운용수익	-4,809	-3,157	-15,498

이자수익	21	4	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4,831	-3,162	-15,499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575	583	1,435
관련회사 보수	571	580	160
매매수수료	1	1	0
기타비용	2	2	1,275
당기순이익	-5,385	-3,740	-16,933
매매회전율	0	0	0

주1)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등이 포함되며, 직전 3개년도 회계기간의 기타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기타수익		
제 16기	제 15기	제 14기
(2022.04.10 – 2023.04.09)	(2021.04.10 – 2022.04.09)	(2020.04.10 – 2021.04.09)
-	-	-

주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되며, 직전 3개년도 회계기간의 기타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기타비용		
제 16기	제 15기	제 14기
(2022.04.10 – 2023.04.09)	(2021.04.10 – 2022.04.09)	(2020.04.10 – 2021.04.09)
-	-	-

주4) “가. 요약 재무정보상의 대차대조표”와 “나.의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5) “가. 요약 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다.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6) 본 집합투자기구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			전기		
	거래금액(A)	거래비용(B)	비율(B/A)	거래금액(C)	거래비용(D)	비율(D/C)
주식	0	0	0	0	0	0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0	0	0	0	0	0
부동산	0	0	0	0	0	0

장내파생상품	0	0	0	0	0	0
장외파생상품	0	0	0	0	0	0
합계	0	0	0	0	0	0

주7) 본 집합투자기구의 당기 주식 매매회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0	0	0	0	0	0	32.00

주8) 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거래비용 및 회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멀티에셋 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 (2022.04.16 – 2023.04.15)			전기 (2021.04.16 – 2022.04.15)		
	거래금액(A)	거래비용(B)	비율(B/A)	거래금액(C)	거래비용(D)	비율(D/C)
주식	621,651	335	0.054	755,959	440	0.0583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20,141	0	0	10,587	0	0
부동산	0	0	0	0	0	0
장내파생상품	966,453	36	0.0038	1,693,283	68	0.0041
장외파생상품	875,131	0	0	712,791	0	0
합계	2,483,377	372		3,172,621	509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21,455,682	298,074	22,067,202	323,554	220,903	146.4	32.00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항목	16기('23.04.09)	15기('22.04.09)	14기('21.04.09)
운용자산	66,875	74,226	75,991
증권	65,916	73,263	75,048
주식	0	0	0
ETF	0	0	0
채권	0	0	0
매입어음	0	0	0
수익증권	65,916	73,263	75,048
외화유가증권	0	0	0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주가지수매입옵션	0	0	0
ELS	0	0	0
ELW	0	0	0
DLS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부동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959	962	490
예금	959	962	490
외화예금	0	0	0
CD	0	0	0
정기예금	0	0	0
위탁증거금	0	0	0
청약증거금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452
콜론	0	0	452
환매조건부채권	0	0	0
기타자산	320	274	403
미수이자	0	0	0
미수배당금	0	0	0
매도유가증권미수입금	320	274	402
선물정산미수입금	0	0	0
선납(선급)원천세	0	0	0
기타	0	0	0
자산총계	67,196	74,500	76,394
운용부채	0	0	0
매도유가증권	0	0	0
미지급주식	0	0	0
미지급채권	0	0	0
미지급ETF	0	0	0
주가지수매도옵션	0	0	0
기타부채	311	268	487
미지급보수	136	132	145
미지급해지금	172	134	245
미지급이익분배금	0	0	95
미지급원천세	0	0	0
기타부채	2	2	2
부채총계	311	268	487
원본	43,314	43,994	42,887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잉여금	23,571	30,237	33,019
당기순이익	0	0	0
김자차익/차손	0	0	0
자본총계	66,885	74,232	75,907

다.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항목	16기('22.04.10~'23.04.09)	15기('21.04.10~'22.04.09)	14기('20.04.10~'21.04.09)
운용수익	-4,809	-3,157	-16,771
투자수익	21	4	0
이자수익	21	4	0
배당수익	0	0	0
기타수익	0	0	0
매매이익	718	274	1,074
주식매매이익	0	0	0
파생상품매매이익	0	0	0
채권매매이익	0	0	0
외환거래이익	0	0	0
유동자산매매이익	0	0	0
ETF매매이익	0	0	0
수익증권매매이익	718	274	1,074
기타매매이익	0	0	0
매매손실	5,549	3,436	17,846
주식매매손실	0	0	0
파생상품매매손실	0	0	0
채권매매손실	0	0	0
외환거래손실	0	0	0
유동자산매매손실	0	0	0
ETF매매손실	0	0	0
수익증권매매손실	5,549	3,436	17,846
기타매매손실	0	0	0
운용비용	575	583	162
위탁보수비	251	254	71
판매보수비	279	283	77
수탁보수비	32	32	9
사무관리보수비	8	9	2
자문보수비	0	0	0
매매수수료	1	1	0
기타비용	2	2	2
당기순이익	-5,385	-3,740	-16,933
비용	6,124	4,019	18,009
수익	739	279	1,075
천좌당 순이익(원)	-68	-48	-1,883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가. 수수료선택-오프라인 (A)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4.10 ~'21.04.09	1.5	1.6	190.2	533.0	32.8	89.7	158.9	444.9
21.04.10 ~'22.04.09	158.9	353.8	13.7	29.6	17.0	36.8	155.6	346.6
22.04.10 ~'23.04.09	155.6	329.1	2.7	5.6	10.8	22.3	147.6	312.4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4.10 ~'21.04.09	0.9	0.9	16.8	39.7	4.5	10.0	13.2	30.6
21.04.10 ~'22.04.09	13.2	25.7	15.8	29.3	4.8	9.2	24.2	45.8
22.04.10 ~'23.04.09	24.2	44.6	7.4	13.1	6.2	11.8	25.3	45.9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 수수료미징구-미징구-오프라인-랩 (C2)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4.10 ~'21.04.09	0.0	0.0	21.4	20.0	1.7	1.4	19.8	18.7
21.04.10 ~'22.04.09	19.8	14.8	2.7	2.0	22.5	16.2	0.0	0.5
22.04.10 ~'23.04.09	0.0	0.0	0.0	0.0	0.0	0.0	0.0	0.0

라. 수수료선취-온라인 (Ae)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4.10 ~'21.04.09	0.6	0.7	66.8	187.8	18.9	52.9	48.5	135.5
21.04.10 ~'22.04.09	48.5	110.2	14.4	31.6	11.7	25.6	51.1	116.2
22.04.10 ~'23.04.09	51.1	110.7	3.6	7.7	7.6	16.1	47.1	102.2

마.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단위: 억화,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4.10 ~'21.04.09	0.0	0.0	0.0	0.0	0.0	0.0	0.0	0.0
21.04.10 ~'22.04.09	0.0	0.0	0.0	0.0	0.0	0.0	0.0	0.0
22.04.10 ~'23.04.09	0.0	0.0	0.0	0.0	0.0	0.0	0.0	0.0

바.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단위: 억화,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4.10~ '21.04.09	0.1	0.1	15.0	39.3	1.2	3.0	13.8	36.3
21.04.10~ '22.04.09	13.8	31.5	3.3	7.3	2.9	6.2	14.3	32.6
22.04.10~ '23.04.09	14.3	30.8	1.6	3.5	1.7	3.6	14.2	30.7

사.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e-P)

(단위: 억화,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4.10 ~'21.04.09	0.2	0.3	50.2	126.1	16.7	41.7	33.7	84.7
21.04.10 ~'22.04.09	33.7	76.8	10.4	22.8	13.2	29.1	30.9	70.6
22.04.10 ~'23.04.09	30.9	67.1	5.1	10.7	6.4	13.6	29.6	64.2

아.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4.10 ~'21.04.09	0.0	0.0	0.1	0.1	0.1	0.1	0.0	0.0
21.04.10 ~'22.04.09	0.0	0.0	0.0	0.0	0.0	0.0	0.0	0.0
22.04.10 ~'23.04.09	0.0	0.0	0.0	0.0	0.0	0.0	0.0	0.0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4.10 ~'21.04.09	1.0	1.0	59.6	66.5	10.4	11.1	50.1	56.3
21.04.10 ~'22.04.09	50.1	45.6	36.0	31.2	19.8	17.4	66.3	59.4
22.04.10 ~'23.04.09	66.3	57.4	17.0	14.3	18.6	16.1	64.6	55.6

차.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p)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4.10 ~'21.04.09	0.0	0.0	16.5	23.3	2.3	2.9	14.3	20.4
21.04.10 ~'22.04.09	14.3	16.6	2.6	2.9	4.4	4.9	12.4	14.6
22.04.10 ~'23.04.09	12.4	13.8	0.8	0.8	0.8	0.9	12.4	13.8

카.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p-e)

(단위: 억화,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4.10 ~'21.04.09	0.1	0.1	105.6	138. 0	29.1	36.1	76.6	102.0
21.04.10 ~'22.04.09	76.6	84.1	53.7	56.7	45.2	47.3	85.1	93.5
22.04.10 ~'23.04.09	85.1	89.0	58.9	61.6	51.8	52.6	92.3	98.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2.04.01~ '23.03.31	21.04.01~ '23.03.31	20.04.01~ '23.03.31	18.04.01~ '23.03.31	
투자신탁 전체	-4.57	-4.77	25.62	15.93	6.17
수익률 변동성	29.36	25.71	30.30	28.43	20.60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5.4	-5.6	24.57	14.89	4.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5.69	-5.89	24.22	14.58	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2)	-2.78	-3.89	0	0	-15.36
수수료선취-온라인 (Ae)	-5.18	-5.38	24.85	15.2	13.78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4.57	-4.84	25.36	15.5	9.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5.64	-5.84	24.26	14.66	9.46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e-P)	-5.31	-5.5	24.69	15.06	9.5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0	0	0	0	0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5.33	-5.53	0	0	-8.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rp)	-5.26	-5.45	0	0	1.7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p-e)	-5.11	-5.31	0	0	-0.66
비교지수	-18.13	30.71	21.45	16.19	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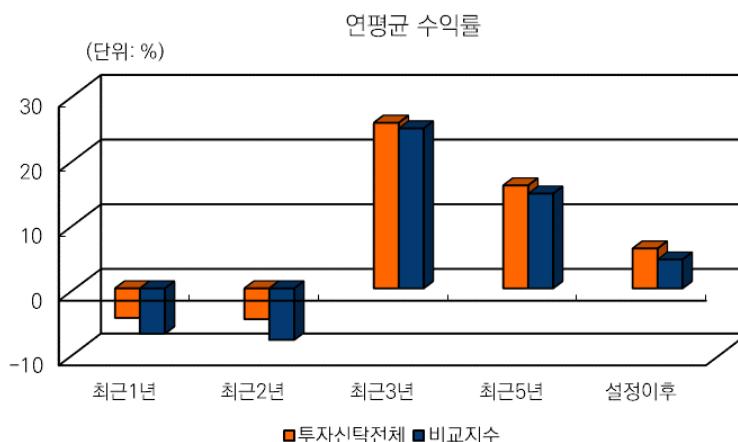
주1) 벤치마크 : S&P Global Clean Energy Index ×90% + Call×10%

주2) 상기 수익률은 증권신고서의 작성기준일(2023.03.31)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나 등락했는지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5) 상기 기준일에 설정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미설정 또는 전부해지된 클래스의 수익률은 '0'으로 표기되며, 전부해지 후 재설정된 클래스의 경우에는 재설정일 이후의 수익률이 표기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22.04.01~ '23.03.31	21.04.01~ '22.03.31	20.04.01~ '21.03.31	19.04.01~ '20.03.31	18.04.01~ '19.03.31
투자신탁 전체	-4.57	-4.97	118.59	3.46	2.13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5.4	-5.79	116.91	2.57	1.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5.69	-6.08	116.41	2.27	0.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2)	-2.78	-4.99	0	0	0
수수료선취-온라인 (Ae)	-5.18	-5.58	117.36	2.86	1.39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4.57	-5.1	117.55	2.87	1.4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5.64	-6.03	116.37	2.39	0.9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e-P)	-5.31	-5.7	117.09	2.71	1.3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0	0	0	2.86	1.49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5.33	-5.72	0	0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rp)	-5.26	-5.65	0	0	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p-e)	-5.11	-5.5	0	0	0
비교지수	-7.02	-8.89	129.2	-0.88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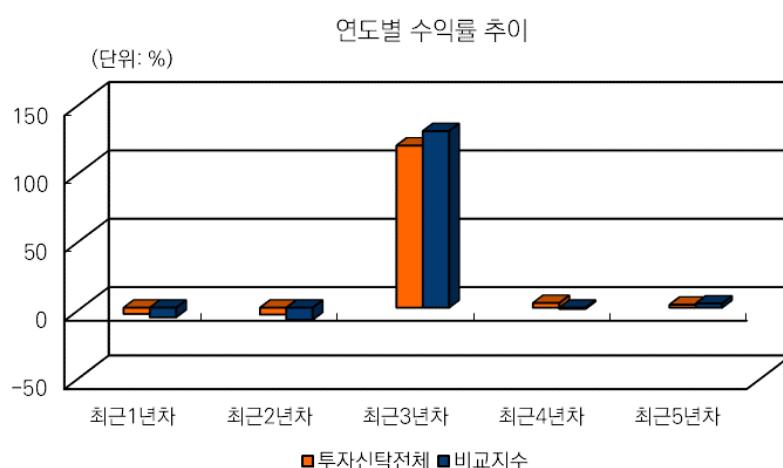
주1) 벤치마크: S&P Global Clean Energy Index × 90% + Call × 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상기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4) 상기 수익률은 증권신고서의 작성기준일(2023.03.31)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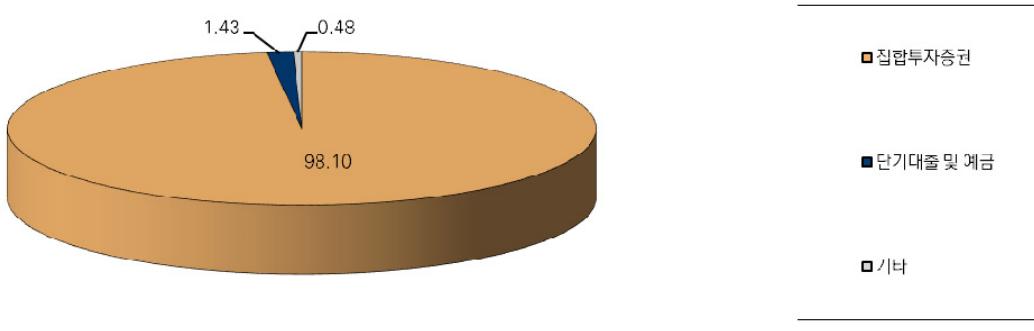
주5) 상기 기준일에 설정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미설정 또는 전부해지된 클래스의 수익률은 '0'으로 표기되며, 전부해지 후 재설정된 클래스의 경우에는 재설정일 이후의 수익률이 표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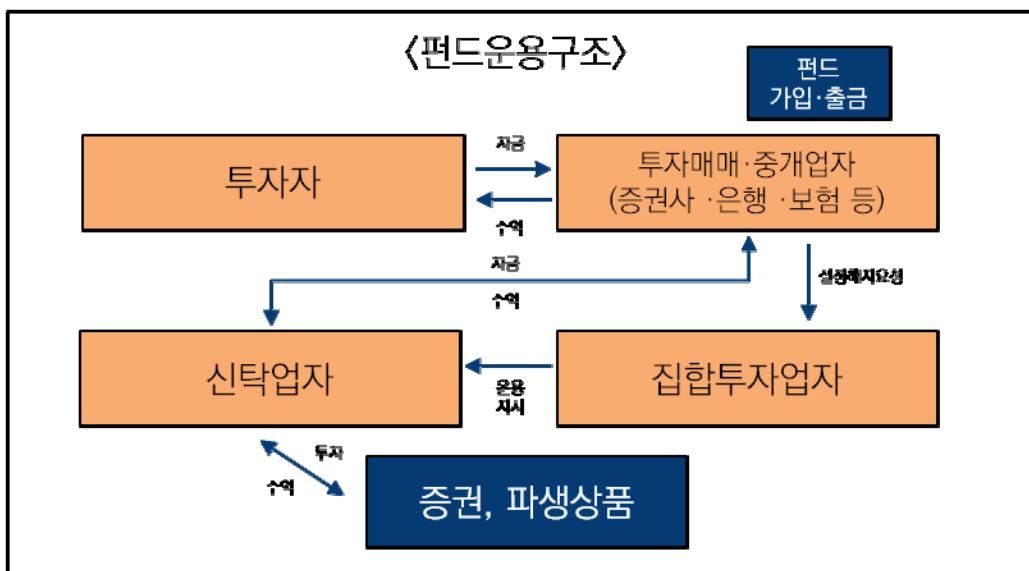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3.04.09 기준, 단위: 백만원, %)

통화구분('23.04.09)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KRW)	0	0	0	65.917	0	0	0	0	0	960	320	67,196
	0.00	0.00	0.00	98.10	0.00	0.00	0.00	0.00	0.00	1.43	0.48	
합계	0	0	0	65.917	0	0	0	0	0	960	320	67,196
	0.00	0.00	0.00	98.10	0.00	0.00	0.00	0.00	0.00	1.43	0.48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미래에셋증권빌딩 16층 (☎02-3774-8000, http://multiasset.miraeasset.com)
회사 연혁	1996. 5 회사설립(서울투자신탁운용) 1997. 5 투자자문업등록, 투자일임업허가 1998.12 자산운용회사등록 2000.06 증자(최대주주 대우증권 변경) 2004.05 증자(최대주주 산업은행 변경) 2004.07 산은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2016.04 멀티에셋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자본금	389 억원
주요주주현황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100%)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22.12.31	'21.12.31	항 목	'22.1.1~'22.12.31	'21.1.1~'21.12.31
1. 현금및예치금	21,850	31,256	1. 영업수익	26,995	27,991
2. 증권	44,947	44,268	2. 영업비용	17,959	21,305
3. 대출채권	606	791	3. 영업이익	9,035	6,685
4. 유형자산	898	1,040	4. 영업외수익	45	755
5. 무형자산	4,051	3,855	5. 영업외비용	13	81
6. 기타자산	11,189	8,812	6.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9,067	7,360
7. 당기법인세자산	-	-	7. 법인세비용	2,202	1,839
8. 이연법인세자산	-	-			
자산총계	83,544	86,024	당기순이익	6,864	5,520
1. 퇴직급여부채	-	-			
2. 충당부채	141	799			
3. 당기법인세부채	1,017	1,148			
4. 기타부채	4,863	5,344			
5. 이연법인세부채	1,864	1,659			
부채총계	7,886	8,951			

라. 운용자산 규모

(2023.03.31 기준 / 단위: 억원)

구분	증권					단기 금융	파생 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 자산	합계
	주식	혼합 주식	혼합 채권	채권	재간접						
수탁고	3,747	2,810	790	12,912	1,233	8,899	916	11,339	25,984	161	68,790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업무의 위탁]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여의도동) ☎ 02-2073-7114
회 사 연 혁 등 (흠 폐 이 지 참 조)	2001년 01월 국민·주택 합병은행, 국민은행으로 새출발 www.kbstar.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44층 ☎ 02-769-78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1998년 회사설립 2000년 금융감독원 일반사무관리업 등록 2022년 사명변경(미래에셋펀드서비스 → 한국펀드파트너스) www.korfp.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KIS채권평가	FN자산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4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건 물 4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태 화빌팅 4층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npricing. co.kr	www.bond.co.kr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및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가.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나.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다.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각 자투자신탁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투자신탁 수익자들의 의결권 행사 내용에 비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투자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 190 조제 6 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증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 집합투자규약 ·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단,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 제6조제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임의해지 절차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투자신탁 원본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임의해지할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해당 투자신탁이 해지되고 임의해지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가능하다고 통지합니다. 임의해지일 이전에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산을 시장에서 모두 매각하여 현금화시키며, 해지일 당일에 투자자의 수익증권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 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전자 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해당 자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및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본·지점,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으로 기준 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5 의 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상기 2 호 및 6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해진대로 다음과 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규약 제 37 조 제 6 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는 제 1 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규약 제 37 조 제 6 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이하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보상 금액: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 집합투자규약 제 39 조제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2. 대상 기간: 변경일로부터 6 개월간. 단,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3. 지급방법: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

⑤ 제 4 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법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를 상대로 투자신탁 설정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 아래의 수시공시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http://multiasset.miraeasset.com>),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한국금융 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자체없이 집합투자업자 (<http://multiasset.miraeasset.com>)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상권,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변경
 -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 ·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증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p>①선정시 고려사항(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증개수수료)이나 수익- 거래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증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p>②선정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개회사의 평가를 통하여 각 자산별로 매매위탁가능 증개회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증개회사는 월간 또는 분기 증개회사의 평가를 통하여 교체 가능하다. <p>③증개회사의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 증개회사에 대한 평가는 각 자산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주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자들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를 부여한다.- 증개회사의 평가자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고, 각 팀의 평가결과는 담당 본부장에게 보고 한다.- 매매담당부서는 평가이 결과에 따라서 자산별 적용기간의 매매위탁 배분계획을 세우고 전 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식형투자신탁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만약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조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리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해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해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